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913 발의연월일: 2025. 4. 17.

발 의 자:윤준병·조계원·송옥주

박홍배 • 문대림 • 허종식

김태선 · 장철민 · 복기왕

김교흥 • 백선희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도 일정한 한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자치구·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,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.

군의 인구수는 자치구나 시보다 적은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많은 경우도 다수 있으며, 관할구역의 면적은 오히려 자치구나 시보다 큰 경우가 많음.

이에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기 간을 자치구·시와 동일하게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60조의2제1 항). 법률 제 호

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의2제1항제3호 중 "자치구·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"를 "자치구·시·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"로 하고, 같은 항제4호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·시·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 
제60조의2(예비후보자등록) ① 예	제60조의2(예비후보자등록) ① -
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(비례	
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	
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)	
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	
(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	
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	
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)부	
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	
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	
신청하여야 한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지역구시·도의회의원선거,	3
<u> 자치구·시의 지역구의회의원</u>	<u> 자치구・시・군의 지역구의회</u>
및 장의 선거	의원 및 장의 선거
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	
4.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	<u>&lt;삭 제&gt;</u>
<u>의 선거</u>	
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	
② ~ 12 (생략)	② ~ ⑫ (현행과 같음)